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87 발의연월일: 2025. 5. 22.

발 의 자:이학영·이용우·조계원

이정문 · 정을호 · 전현희

임호선 · 김태선 · 서영석

정준호 · 김주영 · 박 정

안호영 • 이춘석 • 이해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플랫폼 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과도한 업무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일부 택배사들은 배송 경쟁을 이유로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에도 정상 근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현행법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용인이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노무제공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임.

이에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표권 보장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유권자의 권리를 강화하

고자 함(안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하고 제6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하고,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 ③ 사용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제261조제3항제1호 중 "제6조의2제2항을"을 "제6조의2제2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조의3(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의 투표시간 보장) ① 타인에
	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
	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노
	무를 제공받는 자(이하 "사용
	자"라 한다)에게 투표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u>있다.</u>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청
	구가 있으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
	<u>다.</u>
	③ 사용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
	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고지
	하여야 한다.
제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	제6조의4(감염병환자 등의 선거
권 보장) (생 략)	권 보장) (현행 제6조의3과 같
	승)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1. <u>제6조의2제2항을</u>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 니한 자
- 2. ~ 5. (생략)
- ④ ~ ⑫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제6조의2제2항 또는 제6조
의3제2항을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⑫ (현행과 같음)